

관제소 규정

KAU 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9.6.1		16		
2	2013.12.5		17		
3	2016.10.28		18		
4	2024.4.29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관제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관제소(이하 ‘관제소’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10.28.>

제2조 (업무) 관제소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10.28.>

- 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사항
- ② 비행정보업무에 관한 사항
- ③ 항공교통관제교육원 수색관제탑 및 정석관제탑 실습에 관한 사항
- ④ 항공무선통신장비 및 항공보안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3조 삭제<2016.10.28.>

제4조 (관제소장) ① 관제소장은 관제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.

② 관제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보한다. <개정 2009.6.1., 2024. 4. 29.>

제5조 (직원) 관제소에는 본대학 훈련 항공기에 의한 항공교통량과 관제탑 실습 업무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둔다.<개정 2016.10.28.>

제 3 장 자 격

제6조 (자격) 관제소직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0.28.>

제7조 삭제<2016.10.28.>

제 4 장 직 무 삭제<2016.10.28.>

제8조 (직무) 삭제<2016.10.28.>

부 칙

- 1. 관제소장은 본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한다.
- 2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7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